

Q & A

지방재정 | '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지 방 세 |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지방재정 실무 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련 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 등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신설·폐지되거나 바뀌는 법규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럴 때 궁금증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그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 실무와 관련된 궁금증과 그 답변, 사례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한다. '지방재정' 부문에서는 신문고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 부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감사원 심사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정리했다.



‘지방재정’ 공금증 해결

글 _ 명 삼 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Question

예산전용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하면서 자전거 보관소와 자전거 구입비용을 모두 하나의 대분류 사업명으로 시설비에 계상하여 자전거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과목 수정을 하지 않고, 동일 단위사업 내 재료비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공영자전거 시범운영 세부사업 아래 자산취득비를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을지?

Answer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 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건비, 시설비 및 부 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는 전용이 제한된다. 동일 단위사업의 예산 을 세부사업 간 변경하는 것은 예산의 변경사용에 해당하나, 재료비 (200 물건비)에서 자산취득비(400 자본지출)로 편성목 변경 사용은 예 산의 전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의 재료 비(206)에서 자산취득비(405-01)로의 변경 사용은 예산 전용으로 가능 하다.

Question

예산과 관련된 행사실비 지급

축제를 추진하면서 ○○, ○○ 등 지방 참여단체 대표자(지휘자)의 위 크숍 참여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한다. 자 체 여비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국내 여비로 지방참여단체 대표자에 대한 교통비 등 참여 실비의 국내 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예 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의 경우 속

박비 및 교통비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동일 과목 내 별도 계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회의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일반 운영비 안의 행사운영비로 지급 가능한지? 또한 자체 실비변상규정에 의한 소정의 회의수당과 회의참여 실비의 지급(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청소년 음악회에서의 지급)도 되는지 궁금하다.

Answer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훈령 제206호)’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와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301-09)으로 설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지자체 출연 공연장이라 하더라도 참여단체 대표자(지휘자)의 워크숍 참여에 대한 교통비 및 실비 등은 행사실비보상금(301-09)으로 지급해야 한다.

Question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차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이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 두 가지 다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편성목이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현재 보훈단체의 일부 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예전부터 보훈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단체운영비 및 신청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운영비도 일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받고 있으니,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보아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가능하지 묻고 싶다.

Answer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은 그 지원대상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단체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나 제한은 없다. 다만, 사회

단체보조금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고, 민간경상보조는 사업비 지원에 한정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을 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을 요청한 경비가 운영비 성격인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할 수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Question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서 경비가 1인당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국외출장을 포기하는 의원의 예산을 포함하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국외여비 예산 총액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nswer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 [별표 1]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예산편성의 기준으로서 집행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편성된 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와 [별표 6]에 규정된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Question

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장에 대한 국외연수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훈령·예규와 상충되어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조례가 가진 법적구속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상충되더라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등 법령의 직접

적인 위임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기능의 행정규칙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인 국외여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Question

민간자본보조 지출

○○공단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민간인지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선정 시 민간인이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비·도비·시비로 약 70% 가량 지원한다. 나머지 금액인 약 ○○만 원은 개인이 부담한다. 지자체에서 ○○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지역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여 지원사업으로 이자부담 금액(○○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그린홈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 시 민간인이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자부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도·시비로 70% 가량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가 민간인 자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지역 마을에 민원이 발생하여 지원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거주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Question

민간대행 사업비 편성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구립 어린이집 및 직업체험 도서관을 설치하려는데, 시설물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가능한지?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가능하다면, 운영기준 상 a)의 법령의 규정 또는 b)의 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처럼, 조례(규칙포함) 또는 방침에 근거해서도 가능한지 묻고 싶다.

Answer

‘민간대행 사업비(402-02) 예산편성 과목’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훈령 제206호)’ 제6조의 [별표 9]에 따르면 민간대행 사업비(402-02)는 ①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1~2호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하도록 되어있다.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및 직업 체험도서관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이라면 민간대행 사업비(402-02)의 예산과목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Question

예산 변경사용

지방예산 중에서 의회비(205) 운영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목 중에서 의회비(205)의 9개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등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연찬회 등 사업품질을

높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방법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도 무방한지를 궁금하다.

Answer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 제4조의 [별표 1]에 따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 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경비로서, 연간 예산금액은 인원 비례로 산출하여 예산편성 한도액(의장·부의장: 2,500원 × 의원 수, 의원 180만 원 × 의원 수)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국외여비는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의회비(205)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205-05)에서 국외여비(205-04)로의 예산 변경사용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의회비 중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별표 5]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다만,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Question

지방채권 관계 성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권 관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현행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채권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채권’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상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러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을 적용한다. ☞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글 _ 오 정 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Case 01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도 동일인으로 보아 수용 등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2. 3. 15. 선고2011두14524 판결)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확정된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지 등을 수집·가공하는 사업을 한 것을 원고 개인이 사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08. 7. 15.경 법인登記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한 이후인 2008. 12. 31. 폐업하였다. 그 이후 2009. 8. 14. 이 사건 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Case 02

산업단지를 고유로 조성한 후 분할 시 등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6077 판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수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있는 점, 여러 사람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달리 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공유 부동산에 대한 분할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위와 같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용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각자 소유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 그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공유물 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분할등기도 위 각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등록세가 면제된다.

Case 03

어린이집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경영할 경우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9755 판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가 추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 이란 의미는 당해 재산 용도가 직접 그 본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원고 □□□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 취·등록세 추정사유가 없다.

Case 04

대도시 내의 법인이 5년 이내에 공유등기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세 종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19812 판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후단은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령의 주된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단기간 내에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는 데 있는 점, 대도시 내의 법인이 기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 부동산에 분산된 지분을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인구집중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 제131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등기를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에 의한 등기와 구별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과규정인 이 사건 법령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도 양자의 등기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공유 부동산을 분할함에 따라 하는 등기는 이 사건 법령에 따른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ase 05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제조나 건조된 차량이나 선박 등의 실수요자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2198 판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의 입법 취지가 판매회사나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을 제조·조립·건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으로부터 차량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제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란 차량 등의 제조자 등이나 판매회사에 대응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의미하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 등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Case 06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30502 판결)

받을 어음 및 매출채권은 합성수지 사업과 관련하여 화학약품 공급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전 ○○○○주식회사의 자산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한다.

이들 자산이 위 회사에서 분할된 원고 회사에 포괄승계되지 않은 이상 과세특례 요건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본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을 충족하지 못한 한편, 이 사건 받을 어음은 배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채권양도로 손쉽게 원고 회사에 분할(이전)해줄 수 있으므로 그 성질 상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소정의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Case 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해당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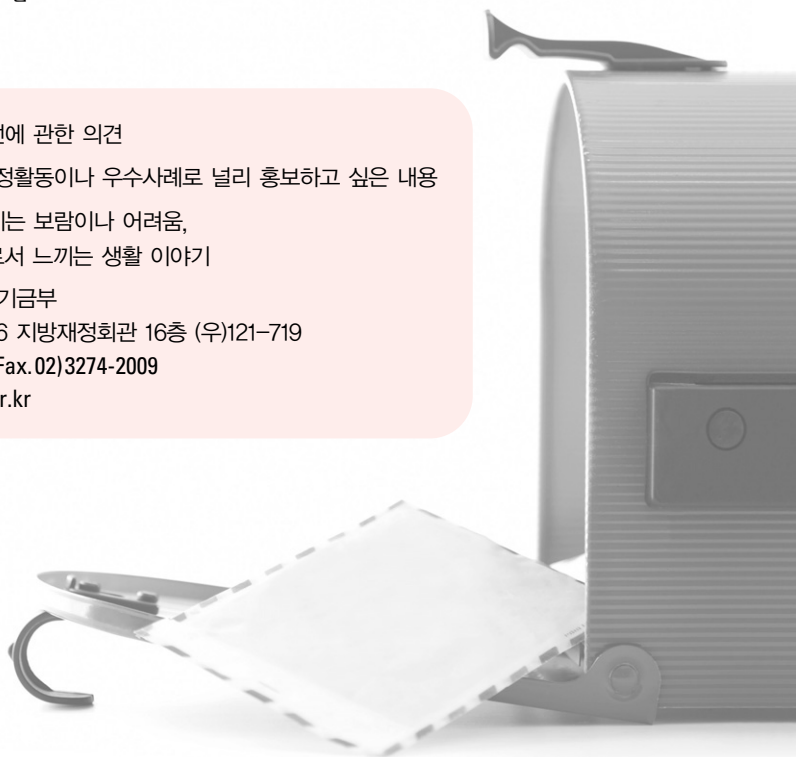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1136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뿐 아니라, 광역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지방재정’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격월간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 교양지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방재정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 지방재정 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에 세 이 |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 이야기
- 보내실 곳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16층 (우)121-719
Tel. 02)3274-2027 / Fax. 02)3274-2009
E-mail. myposse@klfa.or.kr



편집 후기 07*08

지금 대한민국은 여름휴가가 한창이다. 서울 도심은 텅텅 비었다. 산과 바다, 계곡 등이 있는, 전국에서 이름 있다 하는 관광지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잠시 머물며 생활에 찌든 때를 벗겨내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우리들. 그곳을 찾은 우리들은 과연 그곳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관광 정보와 맛집 위치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그곳의 역사와 문화, 그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까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폭염 특보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격월간 지방재정 네 번째 호 마무리 작업을 하다 말고 잠시 드는 생각이다.



“예비 재정인의 시각”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 응모자격 |

-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단독 및 공동연구(3인 이내) 가능
※ 공동연구 시 모든 참가자가 공모자격을 갖추어야 함

| 연구주제 |

- 자치단체 예산, 지방계약, 공기업 혁신 등 지방재정 관련 자유 주제

| 특 전 |

- 채택 시 우리회가 발행하는 「지방재정」지에 원고 게재 및 원고료 지급
• 기고된 원고는 우리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재정인’ 후보로 자동 등록

| 제출방법 |

- 한글 문서 A4 15매 내외 서술형 논문 • 온라인 접수(myposse@klfa.or.kr)

| 접수안내 |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접수 및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Tel.02-3274-2027)